

질의내용	답변
<p>력 확인 없이 고용하였다가 적발된다면,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?</p>	<p>다 적발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조치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선,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성범죄 경력자가 고용된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,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폐쇄 또는 등록·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와는 별도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- 그 외에 의료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p>Q5. 해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.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</p>	<p>A5. 해임 요구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은 통지받은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해임요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요구 통지에 대한 이의내용을 작성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시면 되며, 제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</p>
<p>Q6. 임시로 고용된 의료인(대진의 등)의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?</p>	<p>A6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의거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 노무가 제공되기 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. 이를 위반 시 법 제54조제2항 따라 과태료가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.</p>
<p>Q7.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의 여</p>	<p>A7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</p>